



새수영

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 람	기관의 장

수영구보

호외 제635호 2021. 12. 29.(수)

조례

○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-----1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에서 의결된
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
이에 공포한다.

2021년 12월 29일

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강 성 태

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1114호

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

부산광역시 수영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일반건축물(제25조제2호 관련)

「경관법」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. 다만, 경관위원회 심의 받은 건축물 중 연면적의 1/10 이내의 건축물, 또는 2개층 이하의 증가 또는 축소하는 건축물과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.

1. 1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,000㎡ 이상 건축하는 건축물
2. 해안(수영강 포함)에 접하여 건축하는 건축물(해안과 대지의 사이에 도로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)

※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을 포함한다.

◆ 제안이유

도시가로경관을 결정짓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로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일반 건축물의 범위를 완화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경관심의에서 제외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건축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구민의 시간적·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◆ 주요내용

가. 경관심의 대상인 일반건축물에 관한 사항 개정 (별표 3)